

예 천 군



군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제1264호 2020. 11. 12.(목)

선 람	기 관 의 장

조 례

- 예천군 임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예천군 조례 제2413호)
- 예천군 주민참여포인트제 운영 조례(예천군 조례 제2414호)
- 예천군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등 공개에 관한 조례(예천군 조례 제2415호)

공 고

- 「예천군 공영자전거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예천군 공고 제2020-1352호)

회 람									
--------	--	--	--	--	--	--	--	--	--

발 행 예천군 편찬 기획감사실(전화 650-6066)

예천군의회에서 의결된 예천군 임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0년 11월 12일

예 천 군 수

예천군 조례 제2413호

예천군 임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예천군 임업인의 권익을 증진하고 임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며 산촌지역을 진흥시켜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임업인”이란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임업인, 임업후계자, 독립가를 말한다.
2. “임업후계자”란 법 제2조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3. “독립가”란 법 제2조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들을 말한다.
4. “임업관련 단체”란 「민법」 제32조에 따라 산림청장 또는 경상북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과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에

따라 등록한 단체 중 임업 및 산림관련 단체를 말한다.

5. “임업인 등”이란 제1호에서 제4호까지에 정한 사람과 단체를 말한다.

6. “임산물”이란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제1항 및 별표 2에 따른 임산물 소득원의 지원대상 품목을 말한다.

제3조(군수 및 임업인 등의 책무) ① 예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임업인 등의 권익 보호와 임업의 경쟁력 강화와 소득증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임업인 등은 임업 및 산촌의 발전 주체로서 임업의 경쟁력 강화 등 예천군 임업 및 산촌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사업) 군수는 임업인 등의 소득증대 및 경영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을 할 수 있다.

1. 임업 관계자의 산림경영 컨설팅 지원사업
2. 제2조제6호에 따른 임산물 소득원의 지원 대상사업
3. 경영능력 향상 및 산림소득 증대를 위한 각종 교육·연수사업
4. 임산물의 생산, 유통, 이용, 가공 및 보관사업
5. 그 밖에 임업인 등의 사업 활성화를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사후관리) ① 군수는 제4조에 따른 지원사업에 대하여 목적 외로 사용되는 일이 없도록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지원 사업의 확인 등을 위하여 관련자료의 제출

을 요구하거나 관계 공무원에게 현장 확인 등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제6조(다른 조례의 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의 보조금 지원, 관리,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예천군 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정이유

예천군 임업인의 권익을 증진하고 임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며, 산촌의 진흥을 통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주요내용

가. 군수 및 임업인의 책무 (제3조)

- 군수는 임업인 등의 권익보호와 복지향상, 소득증대를 위해 노력
- 임업인 등은 예천군 임업 및 산촌발전을 위해 노력

나.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제4조)

- 임업 관계자의 산림경영 컨설팅 지원
- 임산물 소득원의 지원 대상사업 지원
- 경영능력 향상과 소득 증대를 위한 각종 교육, 연수사업
- 사업 활성화를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다.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제5조)

- 지원사업에 대한 지도감독 철저
- 관련 자료 제출 요구 및 현장 확인 실시 규정 명시

라. 보조금 지원 및 관리, 정산에 필요한 준용규정 등 (제6조)

예천군의회에서 의결된 예천군 주민참여포인트제 운영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0년 11월 12일

예 천 군 수

예천군 조례 제2414호

예천군 주민참여포인트제 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정에 대한 주민의 참여를 활성화하고 행정의 민주성과 효율성을 증대하기 위하여 주민참여포인트제의 기본적 사항을 정함으로써 예천군과 주민이 협력하여 지역사회의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민참여포인트제"란 군정의 의사형성 단계부터 집행 단계까지 주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참여 실적에 따라 포인트를 부여하고 이에 상응하는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제도를 말한다.

2. "포인트"란 군정에 참여하는 사람에게 부여하는 점수를 말한다.
3. "인센티브"란 예천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참여자에게 누적 포인트에 따라 지급하는 보상을 말한다.
4. "참여자"란 주민참여포인트제에 참여한 사람을 말한다.
5. "관리부서"란 주민참여포인트제를 총괄하여 관리·운영하는 부서를 말한다.
6. "사업부서"란 포인트 부여대상을 소관하는 군 본청 실·과, 직속기관, 사업소 및 읍·면을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군정에 참여하는 주민의 연령, 성별, 주소지 등을 제한하지 아니한다.

제4조(포인트 부여대상 및 부여기준) ① 포인트 부여는 오프라인 및 군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참여를 포함한다.

② 포인트 부여대상 및 부여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③ 포인트 부여는 별지 제1호서식의 주민참여포인트 부여 신청서에 따른 참여자의 신청에 의하여 부여한다.

④ 참여자 1인당 부여하는 포인트는 연간 200,000포인트로 제한한다.

제5조(포인트 관리) ① 예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주민참여포인트제의 운영·관리 및 포인트 열람 등 참여자의 편의를 위해 주민참여포인트제

관리시스템을 운용한다.

② 사업부서의 장은 참여자 및 포인트 발생내역을 관리부서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③ 관리부서의 장은 제1항의 통보에 따라 참여자에 대해 포인트를 부여하고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포인트 관리대장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인센티브 신청 및 지급 등) ① 군수는 누적 포인트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인센티브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인센티브는 참여자의 신청에 의해 지급하며, 지급기준과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인센티브 신청은 별지 제3호서식의 인센티브 지급 신청서에 따라 참여자가 온라인 및 방문 등을 통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2. 인센티브 지급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연 2회(1월말, 7월말) 지급한다.

3. 인센티브는 1포인트당 1원으로 환산하여 5,000원 단위로 지급한다.

4. 인센티브로 지급되지 않은 포인트는 익년도로 이월할 수 있다.

③ 인센티브는 예천사랑상품권 등으로 지급할 수 있으며, 지급된 포인트는 즉시 소멸된다.

제7조(포인트 부여 제외) 다음 각 호의 사람은 포인트 부여 및 인센티브 지급에서 제외한다.

1. 군 소속 공무원
2. 예천군의회 의원
3. 별도의 수당, 대가 및 그 밖의 이익을 받고 군정에 참여하는 사람

제8조(포인트 소멸기준) 5년 동안 포인트가 누적되지 아니하는 경우
포인트는 모두 소멸한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주민참여 포인트 부여대상 및 부여기준(제4조 관련)

포인트 부여대상		포 인 트 부여기준 1회당(점)	비 고
구분	내용		
주민참여 예산제	• 예산편성 의견제출	1,000	공익성 있는 내용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낭비	• 예산낭비사례신고	2,000	
예산절감	• 예산절감제안	2,000	
제안마당	• 제안제도 접수 • 군 홈페이지 접수	1,000	아이디어실시제안, 실질적 군민불편사항이 개선된 경우 등
입법예고	• 입법예고 의견 접수	1,000	
군정시책	• 군정 아이디어 및 기타 개선사항 건의 등 군정 시책 참여	2,000	

※ 단순 건의사항 및 포인트 획득만을 위한 중복·반복적 참여 시 포인트
부여에서 제외될 수 있음

주민참여포인트 부여 신청서

신청자	성명	주택전화	
		휴대전화	
	주소		
참여 일시		신청 포인트(점)	
참여 내용			

「예천군 주민참여포인트제 운영 조례」 제4조제3항에 따라 주민참여
포인트 부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 예천군 홈페이지 등 신청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적 방법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신청자의 서명을 생략할 수 있음

【별지 제2호서식】

주민참여포인트 개인별 관리대장

[illegible]

인센티브 지급 신청서

신청자	성명	자택전화	
		휴대전화	
	주소		
누적 포인트		사용 포인트 (금회)	

「예천군 주민참여포인트제 운영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라 인센티브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 예천군 홈페이지 등 신청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적 방법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신청자의 서명을 생략할 수 있음

◇제정이유

군정에 대한 주민의 참여를 활성화하고 행정의 민주성과 효율성을 증대하기 위하여 주민참여포인트제의 기본적 사항을 정함으로써 예천군과 군민이 협력하여 지역사회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함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제1조)

- 군정에 대한 주민의 참여활성화 및 행정의 민주성과 효율성을 증대하여 지역사회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함

나. 포인트 부여대상 및 부여기준 (제4조)

- 포인트 부여는 오프라인 및 군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참여 포함

다. 인센티브 신청 및 지급 등 (제6조)

- 인센티브는 참여자의 신청에 의해 지급하며 누적 포인트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예천사랑상품권으로 지급되고 지급된 포인트는 즉시 소멸됨
 - 인센티브 지급은 연 2회(1월말, 7월말), 1포인트당 1원으로 환산하여 5,000원 단위로 지급
 - 인센티브로 지급되지 않은 포인트는 익년도로 이월

라. 포인트 부여 제외 (제7조)

- 군 소속 공무원, 예천군의회 의원, 별도의 수당 대가 및 그 밖의 이익을 받고 군정에 참여하는 사람

예천군의회에서 의결된 예천군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등 공개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0년 11월 12일

예 천 군 수

예천군 조례 제2415호

예천군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등 공개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예천군의 예산절감 사례를 주민들에게 공개함으로써 공무원과 주민에게 예산절감에 대한 동기를 부여하고 예산집행의 효율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여 예산낭비 방지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공개대상) ① 이 조례에 따른 공개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예산절감 사례
2. 주민의 예산낭비신고 및 예산상 시정요구·감사요구와 그 조치결과에 관한 사례
3. 주민의 예산절감 및 수입증대와 관련된 제안 사례

4. 그 밖에 예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② 제1항 각 호는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조사 및 재판이 진행 중인 경우에는 공개대상에서 제외한다.

제3조(공개방법) ① 군수는 제2조에서 정한 공개대상 사례를 예천군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② 공개된 사례에 대하여는 사례집을 발간할 수 있다.

③ 공개대상 사례 공개 시 이름·주민등록번호·직위 및 주소 등 특정인임을 알 수 있는 개인정보는 삭제한다.

④ 공개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및 「예천군 정보공개 조례」에 따른다.

제4조(신고센터 설치 등) 신고센터 설치에 관하여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4조의2를 준용한다.

제5조(예산낭비 등 심사) ① 군수는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신고 등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심사할 수 있다.

② 예산낭비 등에 대한 심사는 「예천군 예산성과금 운영 규칙」 제5조에 따라 예천군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가 시행한다.

제6조(성과금 지급 등) ① 군수는 예산의 집행방법이나 제도개선 등으로

예산이 절약되거나 수입이 늘어난 경우에는 절약한 예산 또는 늘어난 수입의 일부를 이에 기여한 자에게 성과금으로 지급하고 포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성과금 지급 및 포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예천군 예산성과금 운영 규칙」 및 예천군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정이유

예천군의 예산절감 사례를 주민들에게 공개함으로써 공무원과 주민에게 예산절감에 대한 동기를 부여하고 예산집행의 효율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여 예산낭비 방지를 위함

◇주요내용

가. 공개대상 (제2조)

- 예산절감 사례, 주민의 예산낭비신고 및 예산상 시정요구·감사요구와 그 조치결과에 관한 사례, 주민의 예산절감 및 수입증대와 관련된 제안 사례 등

나. 공개방법 (제3조)

- 군 홈페이지에 공개하며 공개된 사례에 대하여는 사례집 발간할 수 있음
- 공개대상 사례 공개 시 이름, 주민등록번호, 직위 및 주소 등 특정인임을 알 수 있는 개인정보 삭제

다. 성과금 지급 등 (제6조)

- 예산의 집행방법이나 제도개선 등으로 예산이 절약되거나 수입이 늘어난 경우 절약한 예산 또는 늘어난 수입의 일부를 성과금으로 지급하고 포상

「예천군 공영자전거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예천군 공영자전거 관리·운영 조례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군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예천군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1월 12일

예 천 군 수

1. 개정 이유

공영자전거 운영을 통해 수렴된 주민의견을 반영하여 공영자전거 이용편의 증대 및 서비스 만족도를 향상시키고, 공공사업으로의 본연의 기능에 주안점을 두어 기본이용요금을 변경(무료 운영)하고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하는 한편 ‘곤충도시 클린 예천’의 이미지에 부합하는 ‘청정도시’로 기능하게 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공영자전거의 명칭 변경 (안 제2조)

- 현행 : 타이소
- 개정 : 경북도청신도시 공영자전거

나. 공영자전거의 이용대상 변경 (안 제4조)

- 현행 : 기존 만 15세 이상에서 자전거 운전이 가능한 사람
- 개정 : 자전거 운전이 가능하고 제5조에 따라 회원가입을 한 사람

다. 의무와 책임 조항 신설 (안 제5조)

- 자전거를 대여받은 자의 안전사고 주의 의무 규정
- 본인 부주의에 의한 사고는 대여받은 자의 책임으로 명시하고 자기책임의 원리를 규정하여 분쟁 소지 제거

라. 공영자전거 기본이용요금 신설, 변경 (안 제6조, 별표)

- 같은 조례 시행규칙으로 정한 요금을 조례로 신설 및 변경
 - 현행 : 기본요금(기본이용 3시간) 1,000원, 추가요금 30분당 500원
 - 개정 : 기본요금(기본이용 3시간) 무료, 추가요금 30분당 500원
- (단, 회원에 한해 대여 가능하며 회원가입비는 1,000원)

마. 공영자전거 운영 및 이용시간 변경 (안 제7조)

- 현행 : 07:00부터 22:00까지
- 개정 : 05:00부터 24:00까지(단, 운영센터는 07:00부터 22:00까지 현재와 같이 운영)

바. 이용카드 제작 및 지원 가능 조항 신설 (안 제8조)

- 스마트기기 사용이 어려운 회원의 이용편의를 도모

3. 개정조례안

- 붙임과 같음

4.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1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예천군수(참조:도시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 및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연락처, 기타 참고 사항 등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방문 제출

1) 전자우편(이메일) : jykim3659@korea.kr

2) 주소 : 경북 예천군 호명면 행복7길 25-4, 스마트도시통합운영센터

3) 팩스 : 054-650-8975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예천군청 도시과 스마트도시팀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와 관련된 사항은 예천군 홈페이지
(www.ycg.kr) 『열린군정-군정소식-입법예고』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문의전화 : 054-650-8975)

입 법 예 고 사 항 에 대 한 의 견 서

☐ 자 치 법 규 명 : 예천군 공영자전거 관리·운영 조례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자치법규안 내용	의 견	비 고

예천군 공영자전거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공영자전거 운영을 통해 수렴된 주민의견을 반영하여 공영자전거 이용편의 증대 및 서비스 만족도를 향상시키고, 공공사업으로의 본연의 기능에 주안점을 두어 기본이용요금을 변경(무료 운영)하고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하는 한편 ‘곤충도시 클린 예천’의 이미지에 부합하는 ‘청정도시’로 기능하게 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공영자전거의 명칭 변경 (안 제2조)

- 현행 : 타이소
- 개정 : 경북도청신도시 공영자전거

나. 공영자전거의 이용대상 변경 (안 제4조)

- 현행 : 기존 만 15세 이상에서 자전거 운전이 가능한 사람
- 개정 : 자전거 운전이 가능하고 제5조에 따라 회원가입을 한 사람

다. 의무와 책임 조항 신설 (안 제5조)

- 자전거를 대여받은 자의 안전사고 주의 의무 규정
- 본인 부주의에 의한 사고는 대여받은 자의 책임으로 명시하고 자

기책임의 원리를 규정하여 분쟁 소지 제거

라. 공영자전거 기본이용요금 신설, 변경 (안 제6조, 별표)

- 같은 조례 시행규칙으로 정한 요금을 조례로 신설 및 변경
 - 현행 : 기본요금(기본이용 3시간) 1,000원, 추가요금 30분당 500원
 - 개정 : 기본요금(기본이용 3시간) 무료, 추가요금 30분당 500원
- (단, 회원에 한해 대여 가능하며 회원가입비는 1,000원)

마. 공영자전거 운영 및 이용시간 변경 (안 제7조)

- 현행 : 07:00부터 22:00까지
- 개정 : 05:00부터 24:00까지(단, 운영센터는 07:00부터 22:00까지
현재와 같이 운영)

바. 이용카드 제작 및 지원 가능 조항 신설 (안 제8조)

- 스마트기기 사용이 어려운 회원의 이용편의를 도모

3. 개정조례안

붙임과 같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

나. 신·구조문대비표 : 붙임과 같음

다. 예산조치 : 2021년 본예산에 700만원 반영(무료 시행 이전 유료회원
가입자에 대한 환급400, 결제관련 앱 변경 300)

라. 규제심사 : 해당 없음

마. 입법예고 : 11월 중

바. 비용추계서 : 미첨부 사유서 불임

사. 성별영향평가 : 주민복지실 의뢰 예정

예천군 공영자전거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천군 공영자전거 관리·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타이소 자전거”(이하 “타이소”라 한다)”를 ““경북도청 신도시 공영자전거”(이하 “공영자전거”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제3호 및 제4호 중 “타이소”를 각각 “공영자전거”로 하며, 같은 조 제5호 중 “타이소”를 “공영자전거”로, “가입절차 및 사용료를 납부하여 일정기간 타이소 이용 권리를 획득”을 “가입절차에 따라 회원가입을 완료”로 하고, 제6호 중 “타이소”를 “공영자전거”로 하며, 같은 조 제7호 중 “타이소”를 “공영자전거”로, “교통카드의 RF칩이 장착되어 회원정보와 연계하여 타이소 데이터베이스에 등록된 RFID카드”를 “공영자전거 데이터베이스에 회원이 등록한 티머니카드 또는 후불교통카드”로 하고, 같은 조 제8호 중 “타이소”를 “공영자전거”로, “통합관리센터”를 “스마트도시통합운영센터 내 공간 및 시설”로 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1호 및 제2호 중 “타이소”를 각각 “공영자전거”로 하고, 같은 조 제3호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제3호 및 제4호로 하고, 같은 조 제3호(중전의 제4호) 중 “센터”를 “공영자전거 시설 및 센터”로 하며, 같은 조 제4호(중전의 제5호) 중 “타이소”를 “공영자전거”로 한다.

제4조 중 “타이소 이용대상은 만 15세 이상으로서”를 “공영자전거 이용 대상은”으로, “가능한”을 “가능하고 제6조의 이용승인을 받은”으로 한다.

제7조부터 제14조까지를 각각 제9조부터 제16조까지로 하고, 제5조 및 제6조를 각각 제6조 및 제7조로 하며, 제5조 및 제8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무와 책임) 자전거를 대여받은 자는 안전사고에 주의하여야 하며, 본인 부주의에 의한 모든 사고는 대여받은 자가 책임진다.

제8조(이용지원) 군수는 공영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이용카드를 제작 및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종전의 제5조)제1항 중 “타이소”를 “공영자전거”로, “회원가입 또는 비회원권(1일권)을 구입하고”를 “회원가입을 하고”로, “타이소 자전거”를 “공영자전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공영자전거의 이용요금은 별표와 같다.

제7조(종전의 제6조)제1항 중 “타이소”를 “공영자전거”로, “07:00부터 22:00”를 “05:00부터 24:00”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 중 “타이소”를 각각 “공영자전거”로 한다.

제9조(종전의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 및 제3호 중 “타이소”를 각각 “공영자전거”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타이소 자전거”를 “공영자전거”로 한다.

제10조(종전의 제8조)제1항 및 제2항 중 “타이소”를 각각 “공영자전거”

로 한다.

제11조(중전의 제9조)제2항 및 제3항 중 “타이소”를 각각 “공영자전거”로 한다.

제12조(중전의 제10조)제2항 중 “타이소”를 “공영자전거”로 한다.

제13조(중전의 제11조)제1항 중 “타이소”를 “공영자전거”로 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
1.“타이소 자전거”(이하 “타이소”라 한다)란 경북도청신도시 내에서 운영하는 무인대여 공영자전거를 말한다.	1.“경북도청신도시 공영자전거”(이하 “공영자전거”라 한다)----- -----.
2.“스테이션”이란 타이소의 무인 대여·반납 및 이용에 관한 정보제공이 이뤄지고 있는 공영자전거 무인 대여소를 말한다.	2.----- 공영자전거----- ----- ----- -----.
3.“거치대”란 회원카드의 인식 또는 버튼조작으로 작동되는 자동 잠금장치가 부착되어 타이소의 대여 및 반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스테이션에 설치된 타이소 전용 시설을 말한다.	3.----- ----- 공 영자전거----- ----- ----- 공영자전거 ----- -----.
4.“시설물”이란 타이소의 무인 대여를 지원 또는 관장하는 스테이션, 거치대, 관제서버 등을 말한다.	4.----- 공영자전거----- ----- ----- -----.
5.“회원”이란 타이소를 이용하기 위하여 정해진 가입절차	5.----- 공영자전거----- ----- 가입절차

및 사용료를 납부하여 일정기간 타이소 이용 권리를 획득한 사람을 말한다. 6.“관제서버”란 타이소와 관련된 회원가입 정보 및 이용정보 등을 총괄하는 서버와 프로그램을 말한다. 7.“이용카드”란 타이소의 편리한 이용을 위해 교통카드의 RF칩이 장착되어 회원정보와 연계하여 타이소 데이터베이스에 등록된 RFID카드를 말한다. 8.“타이소 운영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란 타이소를 체계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한 통합관리센터를 말한다. 제3조(사업의 범위) 예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타이소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도모하고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타이소 운영 활성화에 관한 사항 2. 타이소 시설 및 장비의 확충	에 따라 회원가입을 완료----- ----- -----. 6.----- <u>공영자전거</u>----- ----- -----. 7.----- <u>공영자전거</u>----- ----- <u>공영자전거 데이터베이스에 회원이 등록한 티머니카드 또는 후불교통카드</u>----- -----. 8.“<u>공영자전거</u> ----- ----- <u>공영자전거</u>----- ----- <u>스마트도시통합운영센터 내 공간 및 시설을</u> -----. 제3조(사업의 범위) ----- ----- <u>공영자전거</u>----- ----- -----. 1. <u>공영자전거</u> ----- ----- 2. <u>공영자전거</u> -----
---	--

과 개선 3. <u>타이소 시설의 운영과 수익</u> <u>및 임대 관리</u> 4. <u>센터의 운영 및 관리</u> 5. 그 밖에 <u>타이소</u> 운영에 필요한 행정·재정 지원 제4조(이용대상) <u>타이소 이용대상</u>은 만 15세 이상으로서 <u>자전거</u> 운전이 <u>가능한</u> 사람으로 한다. <신 설> 제5조(이용승인) ① <u>타이소</u>를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u>회원가입</u> 또는 <u>비회원권(1일권)</u>을 구입하고 「<u>타이소 자전거 이용 약관</u>」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u>회원 유형별 가입비 및 이용요금에 대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u> 제6조(운영 및 이용시간) ① <u>타이소</u> 운영시간은 <u>07:00부터 22:00</u>	----- <삭 제> 3. <u>공영자전거 시설 및 센터</u>---- -- 4. ----- <u>공영자전거</u> ----- ----- 제4조(이용대상) <u>공영자전거 이용</u> 대상은 ----- ---- <u>가능하고 제6조의 이용승인</u>을 받은 -----. 제5조(의무와 책임) <u>자전거를</u> 대여받은 자는 <u>안전사고에 주의</u>하여야 하며, 본인 <u>부주의에 의한</u> 모든 사고는 <u>대여받은 자가 책임</u>진다. 제6조(이용승인) ① <u>공영자전거</u>----- <u>회원가입</u>을 하고 -<u>공영자전거</u> ----- -----. ② <u>공영자전거의 이용요금</u>은 <u>별표와 같다.</u> 제7조(운영 및 이용시간) ① <u>공영자전거</u> -----<u>05:00부터 24:00</u>
--	--

까지로 한다.

② 공영자전거를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타이소 운영시간 범위 내에서 타이소를 대여 받을 수 있다.

③ 타이소 1회 대여 시 기본이용시간은 대여 받은 후 3시간으로 하고, 운영시간 내에는 재이용이 가능하며, 기본이용시간 내에 반납을 하지 않을 경우 추가요금은 30분 단위로 납부하여야 한다.

<신 설>

제7조(이용제한 및 변상조치)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사유 및 기간을 타이소 홈페이지에 게재하거나 회원에게 통보한 후 타이소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생략)
2. 타이소 및 시설물의 개·보수 등 정비가 필요한 때
3. 타이소 및 시설물의 이용 시

-----.

② -----
----- 공영자전거 -----
----- 공영자전거-----
-----.

③ 공영자전거 -----

-----.

제8조(이용지원) 군수는 공영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이용카드를 제작 및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이용제한 및 변상조치) ① -----

----- 공영자전거-----
----- 공영자전거-----.

1. (현행과 같음)
2. 공영자전거 -----

3. 공영자전거 -----

현저한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 4. 회원이 「<u>타이소 자전거 이용 약관</u>」을 준수하지 않은 때 5. (생략) ② (생략) 제8조(위탁관리·운영) ① 군수는 <u>타이소</u> 및 시설물과 센터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시설의 관리와 운영에 관한 사무를 법인 또는 단체(이하“수탁자”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수탁자와 협의하여 관리·운영에 필요한 각종 규정을 제정할 수 있고, 수탁자는 제정된 규정에 따라 <u>타이소</u>를 관리·운영하여야 한다. 제9조(운영지원) ① (생략) ② 군수는 수탁자가 <u>타이소</u>의 이용료를 직접 징수하게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u>타이소</u>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수탁자와 협의하여 공무원을 파견하여 근무하게 할 수 있다.	----- 4. 회원이 「<u>공영자전거 이용 약관</u>」을 준수하지 않은 때 5.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10조(위탁관리·운영) ① ---- <u>공영자전거</u> ----- ----- ----- ----- ----- -----. ② ----- ----- ----- ----- <u>공영자전거</u>----- -----. 제11조(운영지원) ① (현행과 같음) ② ----- <u>공영자전거</u> ----- ----- -----. ③ ----- <u>공영자전거</u>----- ----- ----- -----.
--	--

<u>제10조</u>(수탁자의 의무) ① (생략) ② 수탁자는 <u>타이소</u> 및 시설물을 관리·운영함에 있어 목적 외에 사용할 수 없으며, 수탁 받은 재산에 피해가 발생하면 지체 없이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④ (생략) <u>제11조</u>(지도·감독) ①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수탁자에게 <u>타이소</u>의 운영에 대하여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계공무원에게 장부, 서류 그 밖의 물건을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생략) <u>제12조</u> ~ <u>제14조</u> (생략)	<u>제12조</u>(수탁자의 의무) ① (현행과 같음) ② ----- <u>공영자전거</u> ----- ----- ----- ----- ----- -----. ③·④ (현행과 같음) <u>제13조</u>(지도·감독) ① ----- ----- <u>공영자전거</u>----- ----- ----- -----. ② (현행과 같음) <u>제14조</u> ~ <u>제16조</u> (현행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와 같음)
---	--

경북도청신도시 공영자전거 회원가입비 및 이용요금(제6조 관련)

구 분	금 액
회원가입비	1,000원
기본요금 (대여 후 3시간까지)	무 료
추가요금 (대여 후 3시간 초과 시)	30분당 500원

<참고자료>

관 계 법 령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 제10조의2(공영자전거 운영사업)** 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자전거 이용 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공영자전거 운영사업(공중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소유 또는 관리하는 자전거를 이용자로부터 사용료를 받고 대여하는 사업을 말한다)을 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공영자전거 운영사업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